

1. 개정이유

공중보건역사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공중보건역사의 공급 현황 등을 조사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3조의3이 신설(법률 제20326호, 2024. 2. 20. 공포, 8. 21. 시행)됨에 따라 현지조사, 서면조사,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실태조사 내용과 방법(안 제2조)

- 1)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현지조사, 서면조사,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
- 2)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포하도록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(실태조사) ①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.) 제3조의3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(이하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는 현지조사, 서면조사,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면 그 일시, 목적 및 내용 등을 실태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조(실태조사) ①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.) 제3조의3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(이하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는 현지조사, 서면조사,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.</u> <u>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면 그 일시, 목적 및 내용 등을 실태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.</u> <u>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.</u> <u>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</u>